



## 『 일본 콘텐츠 관련법률 소개①』

### ○ 작성 취지

- 금주는 일본 콘텐츠관련 법률소개 첫 번째로, 우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‘인터넷 및 컴퓨터의 저작권’ 관련 궁금 사항을 살펴보는데, 블로그상의 사진게재, 홈페이지의 저작물 여부, 임의 링크’ 등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,  
※출처 : 「저작권의 기본과 구조」(秀和시스템, 2009)
- 일본에서 TV프로그램 제작관련 ‘미성년자의 인터뷰, 미성년자의 심야 프로그램 녹화 출연’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
※출처 : 「TV프로그램 제작의 법률상당」(角川學藝出版, 2008)

### ○ 작성 순서

1. 「인터넷 및 컴퓨터의 저작권」
  - 블로그에 다른 블로그의 사진을 부착하는 경우
  - 홈페이지를 모방 당했다! - ‘홈페이지의 저작권?’
  - 임의로 링크 당했다 - ‘링크의 의미’
2. 「방송 제작시, 미성년자의 배려와 절차」
  - 미성년자 대상의 인터뷰와 보호자의 동의
  - 미성년자 탤런트와 심야에 걸친 프로그램 녹화
3. 「시사점」

## 1. 『인터넷 및 컴퓨터의 저작권』

### □ 「검토 배경」

- 인터넷 검색을 통해, 파일교환 소프트의 이용방법, DVD 카피방법을 간단히 찾을 수 있으며, 서점에서는 관련 해설서가 팔리고 있음
- 컴퓨터의 보급 및 고성능화에 따라 누구라도 간단히 DVD 복사,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가공 및 게재가 가능하게 되었음
- 이와 같은 상황에서, 인터넷 및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 저작권의 침해가 문제시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우선 검토하고, 이렇게 하면 저작권을 침해 하는가 등을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함

### □ 「사례① : ‘블로그에 다른 블로그의 사진을 부착하는 경우’」

#### ● 검토 개요

- 블로그에 붙여 있는 사진의 저작권은, 블로그의 저작권과 동일하지 않음
- 사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됨
- 게재 허가를 받았어도, 사진의 변경을 가하는 것까지 허가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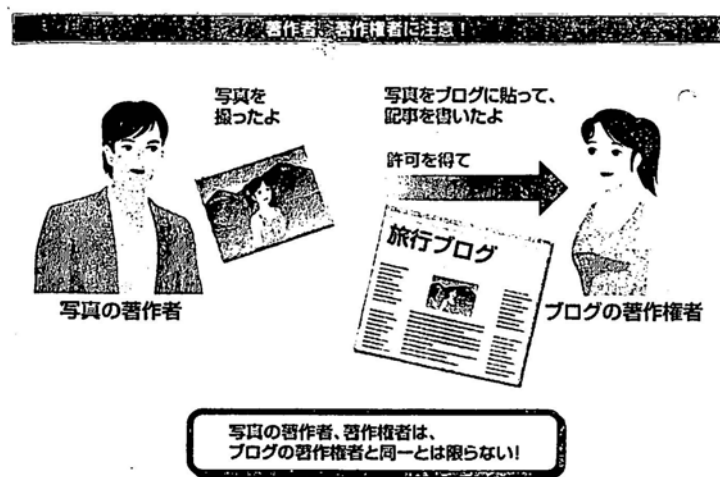
#### ● 검토① : ‘블로그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?’

- 블로그에는,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
- 블로그에 작성된 문장은, 통상의 경우 작성자가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가를 얻으면 블로그에 게재할 수 있음
- 사진의 저작권은 통상 사진 촬영자에 있기 때문에,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타인의 블로그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,
  - 블로그 작성자가 촬영자일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허가를 득하고,
  - 별도의 사람이 촬영한 경우, 작성자에게 사진게재 허가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음
- 남의 블로그에 게재된 사진을 자기 블로그에 붙이고자 할 경우에는,
  - 사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, 그 사람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함

● 검토② : ‘사진의 색상 변경, 트리밍(Trimming) 가능여부’

- 다시 한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은, 저작자 인격권의 침해
  -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상이한 경우, 저작권자에게 게재허가를 받았더라도, 사진의 색상 변경, 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, 사진 촬영자(저작자)의 ‘동일성 보호권’을 침해할 수 있음
- 사진 게재의 목적, 방법에서, 부득이한 최소한의 필요범위에서의 사진 변경을 가하는 것은 가능하며, 이 경우 ‘동일성 보호권’의 침해는 되지 않지만, 부득이한 수준인가 아닌 가의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서 실시
- 사진 게재 시, 저작권자로부터의 게재 허가를 받아두는 것뿐 아니라,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함은 물론 저작자와의 사이에서 저작자 인격권의 행사에 관한 약속을 해 두는 것이 필요

[사진의 저작자, 저작권자는 블로그의 저작권자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]



● 검토③ : ‘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블로그에 게재되었다면!’

-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,
  - 블로그 개설자에게 연락, 자신의 저작권이 무단게제 되었음을 전달하고 삭제 요구
- 만약 개설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, 삭제하지 않는 경우,
  - 그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는 프로바이더에게 연락해서, 송신방지 조치를 의뢰
- 프로바이더 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,
  - 다음 기관을 통해 송신방지 조치(※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대응사업자협의회)

## □ 「사례② : ‘홈페이지를 모방 당했다! 홈페이지의 저작권?」

### ● 검토 개요

- 다른 홈페이지의 문장, 화상 등을 임의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용할 수 없음
- 단, 홈페이지의 HTML Tag 등의 소스부분에 대해서는, 저작물이 아닌 것처럼 보여 지는 경우도 있음

### ● 검토① : ‘홈페이지 자체는 저작물?」

- 홈페이지는 문장, 화상, 음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  -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Part로 문장, 화상, 음악 등은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
- 홈페이지 그 자체는 위와 같은 것들의 저작물을 편집한 것(편집저작물)으로서, 그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견해가 있음
  - 문부과학성 홈페이지(<http://www.mext.go.jp>), 문화청 홈페이지(<http://www.bunka.go.jp>)는 홈페이지 전체가 편집저작물로서 기재되어 있음
- 홈페이지 자체가 편집저작물이 되어 있는 경우,
  - 홈페이지 전체를 카피하면 복제권 침해가 되고, 카피한 것에 변경을 가할 경우 동일성 보호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음

### ● 검토② : ‘HTML Tag 등의 소스부분은 저작물?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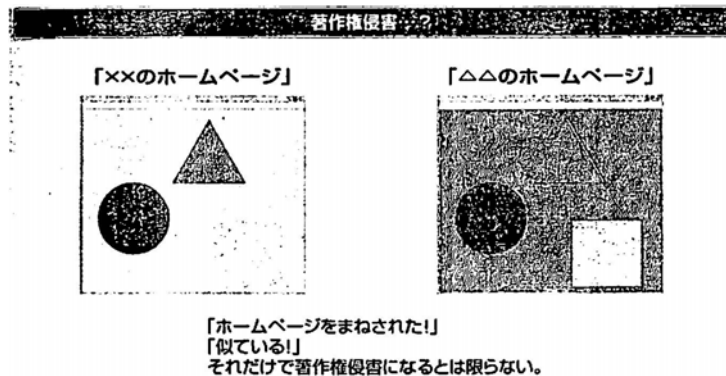
- 한편, 컴퓨터·프로그램에 대하여 누군가 작성했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‘창의성’이 없이 저작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나,
  - 홈페이지의 HTML Tag 등의 소스부분은, 그 작성에 창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창의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, 저작권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음
  -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, HTML Tag를 카피해서 사용했다면 그것만으로 복제권 등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
- 이와 같은 견해를 토대로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,
  - HTML Tag를 카피할 경우 문장과 화상, 음악도 같이 사용하면,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하게 됨

### ● 검토③ : ‘홈페이지가 비슷하다! 저작권 침해인가??」

- 홈페이지 자체가 ‘편집 저작물’이라고 인정하는 경우, ‘저작권 침해’ 인정
- 한편, 홈페이지 자체를 ‘저작물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,

- HTML Tag를 카피해서 사용하기 때문에, 표시된 홈페이지가 유사하다고 해도, 그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

[홈페이지가 비슷하다!, 닮았다! 만으로 ‘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’]



### □ 「사례③ : ‘임의로 링크 당했다! - 링크의 의미’」

#### ● 검토 개요

- 링크를 붙이는 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, 링크 방법에 따라서는 저작권,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
- 침해에 해당되지 않아도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링크를 붙일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

#### ● 검토① : ‘무단 링크와 법률 위반’

- 웹 브라우저 상에는, ‘링크 환영’ 또는 ‘무단 링크금지’라고 써 있기도 함
- 링크에는, 웹 사이트의 타이틀, 상황에 따라서는 URL까지 기재
  - 타이틀, URL 등을 링크하면 바로 그 사이트가 표시되는 경우와,
  - 웹 사이트의 ‘Banner’라고 불리우는 ‘화상(아이콘)’을 링크하여 그 사이트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음
- Banner를 사용하지 않고 웹 사이트의 타이틀, URL을 기재하는 경우에는, 단순 웹 사이트 내용만을 참조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없음
- 소개를 위해 웹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, 인용처 표시,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용하는 등의 공정한 관행을 따르는 것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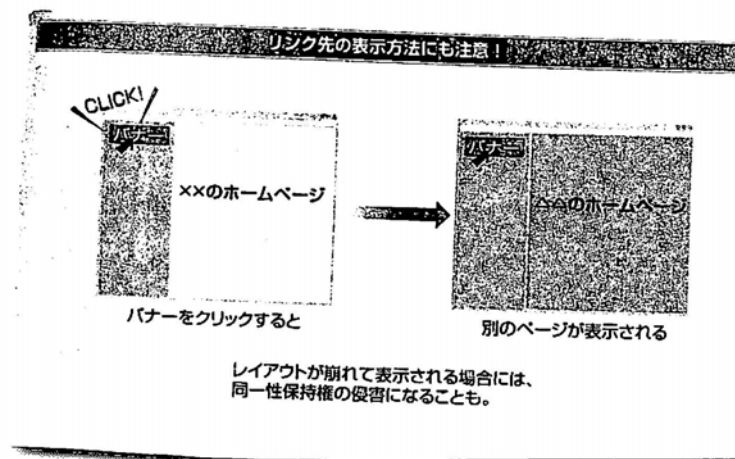
- 특히 웹 사이트 기사를 추출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, 기사출처 등이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,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추출하여 기재하는 것이 **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기에 주의 필요**

● 검토② : ‘Banner’에 붙이는 것

- 한편, 배너를 활용한 링크에 대해서는,
  - 배너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 경우 배너의 저작권자 허가가 없다면 자체 웹 사이트에 붙이는 것은 **불가**

● 검토③ : ‘링크처’의 표시방법

- 링크처의 웹 사이트 표시방법에 따르면,
  - 전술 인용처의 표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인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, ‘동일성 보호권’의 침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 필요  
[레이아웃을 파괴해서 표시된 경우, 동일성 보호권의 침해가 된다]



## 2. 『방송 제작 시, 미성년자의 배려와 절차』

### □ 「사례① : ‘미성년자 대상의 인터뷰와 보호자의 동의’」

#### ● 『Q&A』

- Q. 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행하고, 영상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싶습니다.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지요?
- A. 미성년자라고해서,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질문내용 등의 조건에 따르겠지만, 15세 이상인가 등이 가장 큰 기준점이 됩니다.

√노상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는 인터뷰는 뉴스, 버라이어티 등 다양한 채널의 TV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

√중/고생의 유행에 대해서, 실제 거리를 다니고 있는 중/고생에게 물어보는 일은 자주 발생되고 있지만,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찍어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.

#### ● 『인터뷰의 사용과 프라이버시의 침해·초상권 침해』

- 어떤 사람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을 무단 촬영해서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,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될 가능성이 있음
- 그러나 최초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‘승낙의 효력’
  - 인터뷰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이, 법적으로 유효한 승낙인지 여부가 문제

#### ● 『Key Point』

- ◇ 대상자가 15세 이상이 되면,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인터뷰를 촬영해서 방송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음
- ◇ 대상자가 15세 미만이면, ①미성년자의 연령, ②질문내용, ③회답내용, ④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,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, 본인 동의에 의해 촬영해서 방송해도 법적 문제는 되지 않음
- ◇ 위법여부에 관계없이, 가능한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이, 쓸데없는 트러블 방지

## ● 『미성년자의 경제활동 자유와 인격적 행위의 자유』

- 미성년자의 물건구입 등의 행위 시, 원칙적 **법정대리인인 보호자의 동의** 필요
  -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미성년자가 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, 미성년자 자신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
  -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보호를 받는 연령이 ‘**20세(결혼했을 경우 그 연령)**’
- 이와 관련, 자신에 관한 **정보를 컨트롤하는 인격적 행위에** 대해서는, 일반적으로 **15세 이상**이면 보호자에게 독립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함
  - 인격적 행위는, 예를 들면 신문에 자신의 의사를 투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, 이는 15세 정도면 이미 **보호자의 의견, 이해와 대립**되기도 하여 보호자의 관리 하에 두기보단 **본인의 의사를 존중**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
- 한편, **연예인**으로서 보수를 받고 TV에 출연하는 경우, **인격권의 행사**와 동시에 **경제활동**으로 봐서 20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

## ● 『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인터뷰 출연』

- 미성년자가 인격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기에, **보호자 동의 없이 인터뷰 영상을 사용**하면, 본인동의를 있다 해도 **법적의미에서 완전히 유효한 승낙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**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음
- 그러나 **반드시 위법인 것은 아니며**, 초상권은 ‘**인내할 수 있는 범위 내**’인지, 프라이버시는 ‘**사실을 공표되지 않은 이익이 공표하는 사회적 이익보다 많은가의 여부**’(미 공표 > 공표)를 **사회통념상** 판단해서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
- 이 경우, 15세 미만이면 일단 ‘**본인이 동의했느냐 여부**’가, 사회통념상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됨
  - 요컨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촬영하는 경우 **본인이 의지를 갖고 동의했다면**, 속여 촬영했거나 몰래 숨어서 촬영한 경우와는 결론이 다름
- 어느 쪽이든, 포인트는 ‘**대상자의 연령과 인터뷰의 내용**’
  - 질문이 미성년자의 연령에 비추어 **사회통념상 부적합한 경우**(초등학생 성 경험 질문 등)나, 회답 중에 본인이나 가족의 **프라이버시가 포함된 경우**(자기 아버지 바람피우기 등)에 대해서는, 미성년자 본인이 방송에 동의했더라도 **위법 가능성이 높음**
  - 사회통념상 상당한 질문의 회답(바다, 산 중 좋아하는 곳)의 경우, 특별히



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

● 『실명, 생얼을 나오는 것이 대한 동의』

- 인터뷰 영상에 대해서, 실명, 생얼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**본인 동의 필요**
  - 만약 실명, 생얼이 나오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그대로 방송된다면, **초상권 침해, 프라이버시 침해**가 될 가능성이 있음
- 만약 **부자(父子) 동시 취재**할 때, 본인은 얼굴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고 부모는 아이 얼굴이 나오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면,
  - 미성년자 **본인의 의사**를 우선하게 됨

● 『특별한 배려』

- 미성년자에 대해서는, 세세한 부분에서 **상처받거나, 주위로부터 따돌림 당하거나, 어른에게는 생기지 않는 트러블**이 발생할 수 있음
- 또한 사건, 사고 등을 만날 경우, **성년 이상이 겪는 정신적 충격(Damage)**을 받기도 함
- 15세 이상에 있어서도, **강압적인 질문이나 곤혹감**을 주는 질문, 과도한 **성적 내용**을 포함하는 질문 등은 피해야 함
- 법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더라도, 가능한 **정중한 배려**를 마음으로 제공하여 상대의 시선을 고려해야 함
  - 미성년자의 정신적 부담 감소, 쓸데없는 트러블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절차

□ 「**사례② : ‘미성년자 탈런트와 심야에 걸친 프로그램 녹화’**」

● 『Q&A』

- Q. 심야에 녹화에 미성년 탈런트를 참가시켜도 괜찮습니까?
- A. **18세 미만의 탈런트는, 근로기준법**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**시간대가 제한**됩니다. 단, **대체성이 없는 인기 탈런트**로서, **후생노동성이 정한 기준**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√녹화가 심야에까지 걸치는 것은, **제작 현장에서는 일상다반사의 일**

√그러나, 녹화에 18세 미만의 탈런트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, 18세미만의 미성년 탈런트의 심야 출연은 원칙적으로 제한받음

## ● 『근로기준법의 규제』

- 18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‘근로자’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음
  - 특히 많은 미성년 탈런트는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‘근로자’에 해당
- 특히 많은 경우, 예능 프로덕션은 소속 탈런트의 스케줄 관리, 일의 선택 등에 대해 큰 권한을 갖고 있음
  - 따라서 탈런트의 자유도가 저하되는 등 실질적인 프로덕션 종업원화
  - 특히 미성년 탈런트 사용 시에는, 금지된 시간대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

## ● 『Key Point』

- ◇ 의무교육기간을 마치지 않은 탈런트는,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사용금지. 또한 사전에 근로기준감독부서의 허가 필요
- ◇ 의무교육기간을 마친 18세 미만 탈런트는,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사용금지
- ◇ 사용금지 시간대에는 생방송은 물론 녹음, 회의, 리허설 참가 등이 불가
- ◇ ①비대체성, ②비시간급, ③비구속성, ④비고용계약적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탈런트는 ‘근로자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, 상기 제한을 일체 받지 않음

## ● 『근로자가 아닌 탈런트도 있음』

- 그러나 만약 미성년이라도, 탈런트로서 예능 프로덕션 노동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, 독립성과 보수 면에서 프로덕션 탈런트로 봄
- 소위 일류 탈런트는 예능 프로덕션 종업원이 아닌 1인 개인사업자로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보며, 노동자도 아님. 마찬가지로 미성년 탈런트도 이에 해당

## ● 『근로자의 해당여부 판단기준』

-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‘근로자가 아니다’라는 기준은 4개로,
  - ①비대체성, ②비시간급, ③비구속성, ④비고용계약적
  - 위 4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, ‘근로자’에 해당되지 않아, 심야에도 TV 프로그램 녹화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
- 비대체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지만, 과거 광GENJI, SMAP, SPEED 등이 조건을 충족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판단 시 참고 제공

● 『근로자에 해당하는 미성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심야 사용제한』

- 우선 의무교육기간을 종료하지 않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,
  -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
  - 한편, 의무교육기간을 종료했음에도 18세 미만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금지
- 이 시간대에는, 미성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출연은 물론, 일체의 행사도 금지
  - 결국 금지되는 것은 출연뿐 아니라, 프로그램 협의, 리허설 등도 해당

● 『의무교육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전허가』

- 사전 근로감독기간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(근로기준법 56조 2항)
  -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, 만약 오후 8시보다 빠른 시간이라도 사용자체 불가능
- 방송국 출연을 의뢰하는 미성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통상 프로덕션 소속이 많으며, 따라서 프로덕션이 ‘사용자’로서 근로기준감독부서의 허가를 얻는 경우가 일반적
- 의무교육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용 시, 프로덕션의 허가절차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

● 『연극에서 일부 규제 완화는 TV와는 무관계』

- 의무교육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미성년자 중, 연극에 출연하는 아역에 대해서는, 2005년 1월 1일부터 1시간 규제가 완화되어,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
- 그러나 이는 TV나 영화 등의 제작에 대해서는, 종래와 같이 오후 8시 이후의 사용을 금지
  - 연극의 경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

● 『벌칙 등』

- 사용금지 시간대 미성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,
  -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
- 또한 근로기준감독부서장의 허가 없이 의무교육기간 종료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용 시,
  -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
- 이상의 벌금형은, 당사자 이외에 회사에게도 부과됨

● 『실제상의 배려』

- 만약 법적 ‘근로자’에 해당하지 않고, 근로기준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,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심야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
- 특히 심야 생방송 출연의 경우, 법적으로 ‘근로자’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 토크런트라고 치면, 시청자가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
  - 결국 시청자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

### 3. 『시사점』

-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인터넷 및 컴퓨터 관련 저작권을 잘 알고 이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함
  - 블로그에 다른 블로그 사진 부착 시, 사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및 사전 승낙을 받고, 사진변경 등의 경우에는 ‘동일성 보호’ 범위 내 부득이한 수준 준수
  - 홈페이지 자체는 하나의 저작물로, 복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
  - 링크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, 인용권 표시 등 공정한 관행 준수 필요
- 방송제작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인 배려가 제시되어 있는 바, 관련 규정에 대한 소개를 통해 참고를 제공하고자 함
  - 미성년 인터뷰/영상 방송은, 15세 이상은 보호자 동의 없이 본인동의만으로 가능하며, 그 이하는 연령, 질문내용 등 종합적 판단(가급적 보호자 동의가 바람직)
  - 미성년 탤런트의 심야출연은, 의무교육이수전은 오후 8시~오전 5시, 의무교육이수 후 18세 미만은 오후 10시~오전 5시(단, 연극은 오후 9시~오전 5시)
- 결론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시민의식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함